

연구년제 규정

제정 : 1995. 3. 1.

개정 : 2026. 6. 15.

주관부서 : 교무처 교무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 라 한다) 교원의 연구년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의·치과대학 교원은 의·치과대학 연구년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6.1.26., 2009.12.9., 2011.8.31., 2012.9.7., 2013.10.17.〉

제2조(구분) 연구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2.9., 2011.8.31., 2012.9.7., 2013.10.17.〉

1. 장기연구년 : 6개월 초과 1년 이하

2. 단기연구년 : 6개월 이하

[본조신설 2006.1.26.]

[번호개정 2009.12.9.]

제2장 신청 및 승인

제3조(연구년 신청자격) ① 연구년 교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20., 2011.6.10., 2011.8.31., 2013.8.24.〉

1. 단기 연구년은 3년 이상, 장기 연구년은 6년 이상 근속한 교원. 다만, 신규임용 된 교원은 우리 대학교에서 6년 이상 근속하여야 함(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

2. 연구년 또는 국내외 파견 복귀일로부터 제1호의 조건을 충족한 교원. 다만, 공공기관 파견은 위 제1호의 기간에 산입함.

3. 제1호 내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 〈신설 2018.5.28.〉

② 보직교원(주임교수 제외)의 경우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승진, 정년보장임용, 교수 직급의 업적평가 탈락 교원은 탈락시점부터 1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징계처분일로부터 교원인사규정 제21조 제2항의 기간 동안에는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8.31., 2019.10.24., 2023.10.30., 2026.6.15.〉

④ 연구비(교내, 교외) 수혜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제재 중인 교원은 그 요인이 해소되면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8.31.〉

[전문개정 2009.12.9.]

[제목개정 2012.9.7.]

제3조의2(안식년 신청자격) [본조삭제 2013.10.17.]

제4조(신청절차) 연구년 개시일 기준으로 각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는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공모 기간에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전문개정 2012.9.7.]

제5조(선정범위) ① 연구년 교원의 수는 연간 교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1.26., 2009.12.9.>

② <삭제 2019.10.24.>

③ <삭제 2013.10.17.>

제6조(승인) ① 연구년 교원의 선정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개정 2010.6.1., 2012.9.7., 2013.10.17.>

②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된 자가 연구년 시작 전에 징계 처분을 받거나 승진, 정년보장임용, 교수 직급의 업적평가 탈락 또는 연구비와 관련된 제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한다. <개정 2011.8.31., 2012.9.7., 2013.10.17., 2023.10.30., 2026.6.15.>

③ 연구년 기간은 국내외 파견기간을 포함하여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관 파견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1.6.10., 2011.8.31., 2012.9.7., 2013.10.17.>

④ 연구년을 신청한 교원이 연구년 종료 후 그 기간의 3배 이상을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다만, 만 61세 이상의 교원은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30.>

[전문개정 2009.12.9.]

제6조의2(연구년 기간 변경) 연구년의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학과의 사정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개정 2013.10.17.>

[본조신설 2012.9.7.]

[제목개정 2013.10.17.]

제3장 의무 및 대우

제7조(의무) ① 연구년 기간 중의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나, 강의에 대한 의무만을 면제한다. <개정 2011.8.31.>

② 연구년 교원은 연구활동계획서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년 종료 시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9.7.> <개정 2025.2.20.>

③ <삭제 2017.12.29.>

④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만료 20일 전까지 복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1., 2012.9.7., 2017.12.29.> <번호개정 2012.9.7.>

⑤ <삭제 2012.9.7.>

[전문개정 및 번호개정 2009.12.9.]

제8조(출강금지) 연구년 기간 중에는 다른 대학의 강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31., 2012.9.7., 2017.12.29.>

[번호개정 1997.10.10., 2009.12.9.]

제9조(보수의 반환) ① 연구년을 수행한 교원이 연구년 종료 후 그 기간의 3배 이상을 근무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구년 기간 중 우리 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은 총급여 및 제수당 중 세후 실지 금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61세 이상의 교원은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② <삭제 2013.10.17.>

[본조신설 2010.1.20.]

부칙(1995.3.1.)

제1조(세칙) 이 규정의 운영상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4.9.)

이 규정은 1996. 4. 9.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4.15.)

이 규정은 1997. 4.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0.10.)

이 규정은 1997. 10.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5.7.)

이 규정은 1999. 5. 7.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0.15.)

이 규정은 1999. 10.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6.)

이 규정은 2001. 12.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6.10)

이 규정은 2002.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규정은 2007학년도 연구년 선정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5.1.)

이 규정은 2006. 4.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2. 4.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규정은 2009학년도 연구년 교원 선정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5.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 규정은 제10조는 2009학년도 연구년 선정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12. 9.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연구년에 선정된 교원의 대우 및 의무는 구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10.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1. 20.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연구년에 선정된 교원의 대우 및 의무는 구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10.6.1.)

이 규정은 2010. 6.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8.31.)

이 규정은 2011.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7.)

이 규정은 2012. 9.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8.24.)

이 규정은 2013. 8. 24.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0. 17.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연구년에 선정된 교원의 대우 및 의무는 구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2. 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5.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5.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0.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9.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0.30.)

이 부칙은 2023.10.30.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2.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2.20.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연구년에 선정된 교원은 구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교원의 신청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26.6.15.)

이 규정은 2026.6.15.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2] 연구계획서

연구 계획서

신 청 자	소 속	대학(원) 학부·과		
	직 급		성 명	
연구년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과제명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내용				
연구추진일정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기타 참고사항 (외부기관 지원사항 등)				

※ 별지사용 가능

